



제1684호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03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2
- 공 고 제 1042 호 무단방치(해산간주법인)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7
- 공 고 제 1055 호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9
- 공 고 제 1100 호 간석3동 돌산마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주민의사확인 연장시행 공고 도 시 재 생 과 11
- 공 고 제 1118 호 취득세 6월 공시송달 세 무 과 12
- 보 건 소 공 고 제 4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식 품 위 생 과 14

고 시

- 고 시 제 46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토 지 정 보 과 15
- 고 시 제 47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7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3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초등학교 외 5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설치위치)을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의 대상(6개 학교, 8개소)

연번	학교명	설치위치	수량	장비	설치시기	비고
1	장수초등학교	통학로	1	다기능	2022. 6.~8.	
2	한누리학교	통학로	1	다기능	2022. 6.~8.	
3	송천초등학교	통학로	2	다기능	2022. 6.~8.	
4	원동초등학교	통학로	1	다기능	2022. 6.~8.	
5	고잔초등학교	통학로	2	다기능	2022. 6.~8.	
6	동방초등학교	통학로	1	다기능	2022. 6.~8.	
합계	6개 학교		8			

※ 사업 위치도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5. 19. ~ 2022. 6. 8.(20일간)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 5. 19. ~ 2022. 6. 8.(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8 / FAX : 032)453-289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붙임 1】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도

1. 장수초등학교 일원 (장수초교삼거리→독곡사거리)



2. 한누리학교 일원 (청능대로→인천논현경찰서)



3. 송천초등학교 일원 (소래포구역→논현지구대)



4. 송천초등학교 일원 (논현지구대→소래포구역)



5. 원동초등학교 일원 (논현역→고잔중학교)



6. 고잔초등학교 일원 (송천초교→해안길)



7. 고잔초등학교 일원 (해안길→송천초교)



8. 동방초등학교 일원 (논현역→동방중학교)



※ 화살표는 차량 주행방향임.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e-mail
- 보유·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까지
- 동의의 거부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접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성명

(서명)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42호

무단방치(해산간주법인)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5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5.19. ~ 2022.6.3.

3. 공고대상 : 15나0810

4. 견인일시: 2022.6.3.이후(견인조치)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 자진처리 및 이동을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법,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매각) 될 수 있습니다.

나.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견인예정일자
1	2022-00103	15나0810	오피러스	논현동 690-2	(주)디에이치앤아이 (해산간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1010동 331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2차)	2022.6.3.이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055호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여야 하나, 사망말소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5.23. ~ 2022.6.7.

3. 공고대상 : 07가1130 외 2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폐차장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회수 및 폐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매각) 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1	2022-00075	07가1130	로체	서판로4번길11 가도오피스텔 1층 주차장	서만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4번길 11, 701호(만수동, 가도오피스텔)
2	2022-00080	18우5178	싼타페(SANTAFE)	구월동1227-8 나랑빌라 앞 노상주차장	최영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32번길 43, 302호(구월동, 나랑빌라)
3	2022-00089	인천32바1660	쏘나타	청능대로468번길 고고팩토리 인근 노상주차장	유병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94, 112동 1504호(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00호

『간석3동 돌산마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주민의사(찬·반)확인 연장 시행 공고

간석3동 돌산마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사(찬·반)확인 연장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여율 3분의1미만일 경우, 개표를 미 실시하고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결정하고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참여기간

1) 당초기간 : 4.18. ~6.1.

2) 연장기간 : 2022. 6. 2. ~ 2019. 6. 16. 18:00까지(15일간)

※ 주민의견서를 기 제출한 자는 연장기간에 의사 번복불가

나. 참여방법

1) 우편접수

- 기존에 수령한 등기우편물의 "주민의견서"를 작성 후, 동봉한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우체통 및 우체국을 통하여 접수

※ 등기우편은 우편조사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로 인정

※ 등기소인이 없는 보통우편일 경우에 한하여, 우편조사 마감일의 나흘 후 도착분까지 유효로 인정

2) 직접 방문 제출: 남동구청 도시재생과에 방문 제출 가능(신분증지참)

다. 향후일정

1) 개표일시/장소 : 2022.6.23.(목) / 남동구청 7층 소강당

2) 개표결과 공고 : 개표일 익일 남동구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결 과 통 보 : 간석3동 주민(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일반우편 발송

라. 문 의 : 남동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032-453-2800, 2984)

2022년 6월 2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18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원**중 외 21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1	360221-*****	원**중	101501 2022 03 2 530 006832	취득세	독촉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2,655,220
2	620501-*****	신**일	101501 2022 03 2 551 006680	취득세	독촉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13,924,720
3	791014-*****	박**영	101501 2022 03 2 560 006650	취득세	독촉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451,700
4	700418-*****	김**철	101501 2022 03 2 580 006671	취득세	독촉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16,166,210
5	600907-*****	권**덕	101501 2022 03 2 582 006660	취득세	독촉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17,766,730
6	281201-*****	정**순	101501 2022 03 2 582 006876	취득세	독촉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1,230,810
7	480220-*****	정**구	101501 2022 05 2 510 013349	취득세	수시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2,398,430
8	990818-*****	이**운	101501 2022 05 2 510 018608	취득세	수시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14,794,100
9	401210-*****	최**호	101501 2022 05 2 550 018894	취득세	수시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3,507,380
10	691211-*****	김**완	101501 2022 05 2 551 013468	취득세	수시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1,319,220
11	931121-*****	박**용	101501 2022 05 2 551 018249	취득세	수시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1,469,460
12	890204-*****	이**진	101501 2022 05 2 560 018248	취득세	수시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1,819,700
13	900526-*****	김**정	101501 2022 05 2 660 018219	취득세	수시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917,750
14	700520-*****	유**준	101501 2022 05 2 710 013456	취득세	수시분	2022.05.13.	수령인 없음	1,572,900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4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2. 05. 27.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05. 27. ~ 2022. 06. 10. (15일간)
5. 직권말소 업소 내역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식 품 운반업	2003- 0200064	연수 종합상사	문**	인하로521번길 10-14(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2-11	2022-05-27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년 5월 27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46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석촌 근린공원 조성사업] 간석동 3-10번지 일원 등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붙 임	
기 준 원 점 명	세계측지계좌표	
소 재 지	남동구 간석동 3-10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붙임참조	
표 지 재 질	붙임참조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11점)	

붙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별도첨부) 1부. 끝.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중부		가리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X	Y	X	Y	X	Y				
1	지적도근점	8524	541633.44	174426.28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2	지적도근점	8525	541602.54	174431.48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3	지적도근점	8526	541450.64	174450.28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4	지적도근점	8527	541406.34	174464.43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5	지적도근점	8528	541336.45	174376.56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6	지적도근점	8529	541340.51	174356.39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7	지적도근점	8530	541304.47	174328.34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8	지적도근점	8531	541343.78	174264.11					간석동 3-10	2022.04.14.	PVC	신설
9	지적도근점	8532	541342.41	174198.36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10	지적도근점	8533	541466.74	174236.02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11	지적도근점	8539	541549.33	174266.35					간석동 3-10	2022.04.14.	황동	신설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의 배치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의 배치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1. “배치계획”이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노선”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 중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는 노선을 말한다.
3. “배치정수”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수량을 말한다.
4. “배치지점”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되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위치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배치계획에 포함한다.

5.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배치계획)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재공고 배치노선과 신규 배치노선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와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나) 규정을 따라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전소 설치 목적의 행위허가 허가 신청 전에 이 고시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설치대상자로 선정 받아야 하며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자격

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당시거주자”이거나,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자로,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가), 나) 및 라) 규정을 따른다.

② 입지기준

가.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상이 양호한 임야나 우량농지는 제외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차량진출입로 불허구간에 해당하는 구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다.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지역과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 그리고 터널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라.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 법률에 따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하며,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마.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 1천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바.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 1) 본 고시에 의한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본다.
 - 2)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
- 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배치계획에 의거 설치된 기존의 주유소를 폐지하고 충전소로 용도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의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신청지에서 제외(다만 신청지가 상대보호구역일 때,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지 않음)한다.
- 자. 충전소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차.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③ 시설기준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 나. 충전소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적합하게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해당 점용시설 주변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 (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제5조(타법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도로법, 산림기본법, 학교보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하천법, 환경관계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남동구 및 인천시 시·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재공고·신규 배치노선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 및 처리방법)

-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재공고 배치노선과 신규 배치노선에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1세대 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③ 타인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 ④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서류검토 후 적정 등록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⑤항의 선정순위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순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별표3]의 추천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⑤ 설치대상자 선정순위

- 1순위 : 도심 내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기존의 충전소를 폐쇄 후, 같은 장소에 재설치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 2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3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4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5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⑧ 신청기간 중에 신청 접수자 및 선정자가 없는 경우, 배치 계획상 재공고 배치 노선과 신규 배치노선은 다시 공고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 ⑨ 사전 신청이나 접수기간이 경과된 후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한 자는 이 고시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다.

제7조 (용도변경금지 등)

- 1.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2.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명의변경 금지)

- 1.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 2.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 ①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에 본 배치계획에 의하고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② 행위허가 승인처리 후 1년 이내에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③ 충전소 설치대상 선정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득한 후 「개발제한구역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주유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수기간으로부터 대상자 선정일까지의 기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조 이 고시 시행 시 당초 고시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는 모두 폐지한다.

제4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배치노선상의 충전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공고 노선에 위치한 기존 허가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 이 고시에 따른 충전소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5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은 **허가 신청 직전 배치계획에 따른다.**

문 의 처 도시재생과 그린벨트팀 (☎ 032-453-2970)
생활경제과 친환경에너지팀 (☎ 032-453-6120)

【별표 1】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 배치계획(변경)

연번	구분	배치노선 명 (해당 도로)	구 간 현 황			연 장	충전소 배치정수	비 고
			구 간	시 점	종 점			
1	당초	남동대로-비류대로-호구포로	1구간	구월동 826-2	수산동 195-1	4.3km	1 (안쪽)	변경없음
				구월동 847	구월동 551-1	5.7km	1 (바깥쪽)	제외구간 1.25km
1	변경	남동대로-비류대로-호구포로	1구간	구월동 826-2	수산동 195-1	4.3km	1 (안쪽)	변경없음
				구월동 847	구월동 551-1	5.7km	1 (바깥쪽)	제외구간 1km
2	변경없음	인주대로-수인로 (시흥방향)	2구간	만수동 576-1, 576-7	시흥시계	3.0km	1	변경없음
3	변경없음	백범로-수인로-인주대로 (남동정수사업소→ 동부교육청 방향)	3구간	만수동 590-2	만수동 576-1	3.0km	1	변경없음
4	변경없음	소래로-비류대로	4구간	수산동 7-3	남촌동 150-4	4.1km	1	변경없음
5	변경없음	호구포로-비류대로-소래로	5구간	논현동 513-3	논현동 33-151	4.2km	1	변경없음

※ 변경구간 : 남촌동 509-10 ~ 남촌동 510-6 (약 250m) 배치가능 구간으로 변경됨

☐ 배치계획도(변경)



☐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 세부도[변경노선]



※ 공통사항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곳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터널구간의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포함)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다만 신청지가 상대보호구역일 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지 않음)

【별표 2】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동 시행령 별표1 5호 마-10)

충전소 신청자격	확 인 기 준
○ 도심의 기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	○ 남동구 관내 충전소 운영자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 ¹⁾ 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②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생업을 위한 거주사유 증빙자료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대상 취학생의 주민등록 초본·등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대상 취학생의 졸업 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등 증빙자료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동일 선정순위자 우선순위 추첨 요령

구 분	추첨요령	비고
1. 추첨장소 입실제한	○ 민원접수 1건당 신청인(또는 대리인) 1인만 입실 ①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명찰 또는 공무원증 패용) ○ 필요시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 1~2명 입실	
2. 추첨권 부여	○ 추첨권자 :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지참서류 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②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③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3. 추첨방법	○ 추첨순위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민원서류 접수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호명하여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각자 1매씩 추첨 ③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서명 후 임시보관 ○ 우선순위 결정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추첨순위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 번호 호명 ③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서명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확인 및 회수 후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각자 1매씩 추첨 ④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된 우선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노선명, 신청지번, 전화번호 기재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⑤ 우선순위 결정 추첨 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명부 작성	

【별지 제1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지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목적, 시설규모, 운영, 안전관리, 사업시행 예정일, 재원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기재) 3부 2.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2부 3. 지적도 및 위치도(사업소 위치를 표시한 것) 3부. 4. 등기부등본(토지) 1부. 5. 장기 임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신청하는 경우) 1부. 6. 충전소 시설 배치계획(도로점용계획 포함) 도면 및 공사계획도면(대지 종·횡단면도), 현황실측도 3부. 7. 주변상황(공동주택, 의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격거리 등) 표시도면 3부. 8.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서류(【별표 2】 참조) 및 심사서류(별지2서식) 각 1부. 9.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별지3서식) 1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

신청인			
항목			
본적			
현주소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거주	일자		
	주소		
구역 외 거주기간		사 유	

2022. . .

제출자 성명 : (인)

주소 :

남동구청장 귀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

상기 본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사업신청지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외 필지)에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를 최초 시행하기 위하여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거짓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
자 선정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제출자 성 명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생활경제과 협의 검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2호, 2019. 3.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818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제5항·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제6항·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 제1항”으로,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술·시공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제조소 경계[제조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해 정할 수 있다.

저장능력	제조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40톤 초과	30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별표 4 제1호가목1)다)의 비고 제1호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다.
 2. 동일한 제조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제조소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다) 두 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의 제조소 부지는 그 경계로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라) 제조소에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해야 하며,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이상인 저장탱크를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설비는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로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2일 이상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

바) 저장설비는 부득이한 상황에도 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저장설비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1)에 따른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또는 (3)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1)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소형저장탱크의 충전질량(kg)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 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m)	탱크 간 거리(m)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까지의 거리(m)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2) 토지 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3) 충전질량이 1천kg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에 대하여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1)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1)에 따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cm 이상 높게 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소형저장탱크를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차)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카)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과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타) 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폭발방지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과 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2) 저온저장탱크(이중벽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해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3)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제조소에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압력조정기와 기화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라) 제조소에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하여 정압기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은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 라) 배관은 신축(伸縮) 등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바)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하고 표시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액체상태이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기체상태의 액화석유가스인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가)에서 같다]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지하공간에서의 가스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檢知)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 라)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 마)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 바)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사)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비와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아)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나)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설비에는 살수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다) 가스공급배관에는 그 배관에 위해요인 발생 시 가스를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배관의 분기점 등 필요한 곳에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라)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 가) 제조소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 나) 제조소에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다) 가스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저장설비, 가스설비실 등 적절한 곳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제조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 가) 제조소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나)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cm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별표 19 제4호다목9)에 따른 폴리에틸렌관 융착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8m 이내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을 것

바)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안전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차)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카)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타)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파)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상태를 포함한다)을 표시할 것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3) 밸브등을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로 채우거나 봉인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하)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해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거)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가스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감시할 것

2) 이입 및 충전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하거나 이입할 때에는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나)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90% (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바)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점검기준

- 가) 가스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작동 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 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다)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 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 라) 정전기 제거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 (1)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 (3)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 마)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 바) 슬립 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 사)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 아)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제조소 가스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제조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제조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철거해야 한다.

다. 검사기준

- 1)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 (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항목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정한 항목
다)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해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1)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2)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3)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해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건축물 외부에 정압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기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정압기는 제조소 내에 설치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량 또는 공급압력의 강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소 밖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조소 밖에 설치하는 정압기는 제조소 내에 설치되는 정압기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

2)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설비기준은 제3호를 적용할 것

나) 배관의 끝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않도록 할 것

3) 정압기(실)기준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 및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나) 정압기의 분해점검과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일 것

다) 정압기는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라) 정압기에 별표 7 제4호가목1)가) 또는 마)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 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액화석유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액화석유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바) 전기설비에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갖춘 것일 것

5) 피해저감설비기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6) 부대설비기준

정압기에는 비상전력, 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7) 표시기준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정압기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환상 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 중 1개 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태를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

- 3)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 1)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정압기가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수시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2)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조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1) 가스설비기준

- 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및 (2)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2)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 나) 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압력조정기(이하 "구역압력조정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압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구역일 것

(2) 공급 가능한 전체 세대수는 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

(3) 구역압력조정기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구역압력조정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구역압력조정기는 작업성 확보가 가능하고 위해발생 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제작 또는 설치된 구역압력조정기 외부상자 안에 설치할 것

(5) 구역압력조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6) 액화석유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단장치와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구역압력조정기
외부상자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7) 구역압력조정기 외부상자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차량의 추돌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구역압력조정기 외부상자 외면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상으로
도장을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처 등이 표시된 경계표지와 자물쇠장치를 할
것

(9) 구역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

2)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위치, 배관의 축척 등 배관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

나) 배관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
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구조는 수송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중량, 배관의 내압, 배관 및 그 부속설
비의 자체무게, 토압(土壓: 땅의 압력),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부력 그 밖
의 주하중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 설하중, 온도변
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배닷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할 때 하중의 영향,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 그 밖의 종하중에 따라 생기는 응력
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라)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적
절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 0.1메가파스칼 이
상인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배관의 용접부와 최고사용압력 0.1메가파스칼 미만
인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호칭지름 80mm 이상의 배관의 용접부(건축물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의 용접부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해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할 것

마)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장치(배관 및 그 배관과 일체가 되어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압축기·펌프·밸브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및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전류 차단용) 물질을 삽입할 것

사)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0.2메가파스칼 미만일 것.

아)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미만의 배관과 0.2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미만의 배관과 0.2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 본관과 공급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배관은 배관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배관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3)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4) 배관을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 또는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의 재료 및 구조는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은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상관 차단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카)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로 차단조치를 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타)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건축물에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파)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하)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1)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간격을 유지할 것

(가)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

(나)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호칭지름이 300mm(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mm를 말한다) 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

②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라) 배관을 철도부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지 4m 이상, 그 철도부지 경계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m 이상

(마) 하천,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로 한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은 되어야 한다.

①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L=220\sqrt{P}\cdot d$$

L: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m)

P:사용 압력(MPa)

d:배관 안지름(m)

② 소하천 및 수로: 2.5m 이상

③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1.2m 이상

(바)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은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①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 ② 암반·지하매설물 등으로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 하상을 제외한 하천구역에 하천과 병행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① 정비가 완료된 하천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구역 외에는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 ② 배관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 ③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매설 깊이를 유지할 것
- ④ 배관손상으로 인한 액화석유가스 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액화석유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으로서 매설된 배관이 포함된 구간의 액화석유가스를 30분 이내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거·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는 배관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2) 매설되어 있는 배관 외의 배관(옥외공동구에 설치된 것과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배관장치에는 그 배관장치의 작동 상황과 운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운영상태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안전용 접지장치 등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지하에 매설하거나 수중에 설치하는 강관에는 그 강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다)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에는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지진이나 대형 액화석유가스 누출로 인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구역별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나)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 부근 등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 위급한 때에 액화석유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것으로서 다)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mm(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75mm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것에는 위급한 때에 액화석유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도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라)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위해 요인 발생시 액화석유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그 수량은 전체 배관(사용자 공급관을 제외한다) 길이에 대해 1k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수량 산정시 마)에 따라 설치한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 마) 지하실·지하도 그 밖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가 채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이 표에서 "지하실등"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그 지하실등의 부근에 위급한 때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지하실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될 때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부대설비기준

- 가) 배관장치에는 배관의 유지관리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비상전력, 내용물제거장치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 나) 순회감시 자동차를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
- 다) 물이 채류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취기를 콘크리트 등의 박스에 설치할 것. 다만, 수취기의 기초와 주위를 튼튼히 하여 수취기에 연결된 수취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박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의 박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표시 기준

- 가)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설된 배관의 주위에는 그 배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나) 배관의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액화석유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 황색으로, 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은 황색·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은 적색(폴리에틸렌 배관은 황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 중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으로부터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7) 그 밖의 기준

가) 배관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은 별표 19 제4호다목9)에 따른 폴리에틸렌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하도록 할 것

나. 기술기준

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관·정압기 등의 설치도면·시방서(호칭지름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시공자·시공연월일 등을 전산화할 것

2) 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6개월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안전점검원을 배치할 것

가) 전년 말을 기준으로 안전점검원의 배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까지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배치하며 그 결과를 비치·보관할 것

나) 안전점검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관(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길이 60km 이하의 범위에서 가)에 따른 안전점검원의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할 것

(1) 배관의 매설지역(도심지역, 시 외곽지역 등)

(2) 시설의 특성(배관의 설치년도, 배관의 재질, 사용압력, 매설 깊이 등)

(3) 배관의 노출 유무, 굴착공사 빈도 등

(4) 안전장치의 설치 유무(원격차단밸브, 전기방식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장에 위치한 배관에 대해서는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하의 배관(호칭지름이 100mm 미만인 0.01메가파

스칼 미만의 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노출된 부분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것은 위험한 때에 그 부분에 유입되는 액화석유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부분 양 끝으로부터 300m 이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500m 이내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나) 굴착으로 인하여 20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20m 마다 노출된 액화석유가스가 채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 노출부분의 양끝은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땅에 지지되어 있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라)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노출부분이 다음 표에 따른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와 노출 부분에 수취기·가스차단장치·정압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 또는 용접외의 방법으로 둘 이상의 접합부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 또는 받침방호조치를 할 것

노출된 부분의 상황	양끝부의 상황	
	단단한 땅에 양끝이 지지된 경우	그 밖의 경우
강관으로서 접합부가 없는 것 또는 접합부의 접합방법이 용접으로 된 것	6.0m	3.0m
그 밖의 것	5.0m	2.5m

마) 그 밖에 노출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배관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수시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2)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배관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주요공정 시공감리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을 시공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시공 과정이나 공정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확인·검사할 것

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관계자의 자격, 인적사항 등의 적정 여부

나) 시공자가 유지·보존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록의 적정 여부

- 다) 배관의 재료를 확인하는 공정
- 라) 배관의 매설깊이를 확인하는 공정
- 마) 배관·가스차단장치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 바) 배관의 접합부를 확인하는 공정
- 사) 내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을 하는 공정
- 아) 그 밖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라. 정밀안전진단 기준

1) 정밀안전진단 항목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해 실시할 것

진단분야	진단항목
가) 기계분야	액화석유가스 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배관 피복손상 여부, 배관 취약부분의 두께감소량 측정
나) 전기·계장분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위) 측정, 측정단자의 적정 관리 여부, 계측기기의 관리실태
다) 그 밖의 분야	라인마크·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도면의 정확성

2) 정밀안전진단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0.01 조례 제1020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6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 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등의 노후로 인한 증설없는 시설의 변경 및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동일부지 내에서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시에는 제외한다.

제4조(허가요건)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허가요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부지 일면의 길이가 20m이상 접할 것.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것. 3.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적용할 것. 4.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 충전설비는 대표자의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을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 중 허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사무실은 18㎡, 전용주차면적 46㎡이상을 확보하고,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된 건물일 것. (다만, 1종 보호시설 및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함)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신규허가 시 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1,000m이상을 유지할 것. 5. 일과 종료 후 가스사고발생에 대비하여 1인 이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 상주시킬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간 일정장소에서 야간 근무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상주시켜야 하며,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관련법상 설치 가능한 용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건설과 협의 검토]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 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갓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부칙 <제29634호, 2019. 3. 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부터 ⑧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괴(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 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89호 2019-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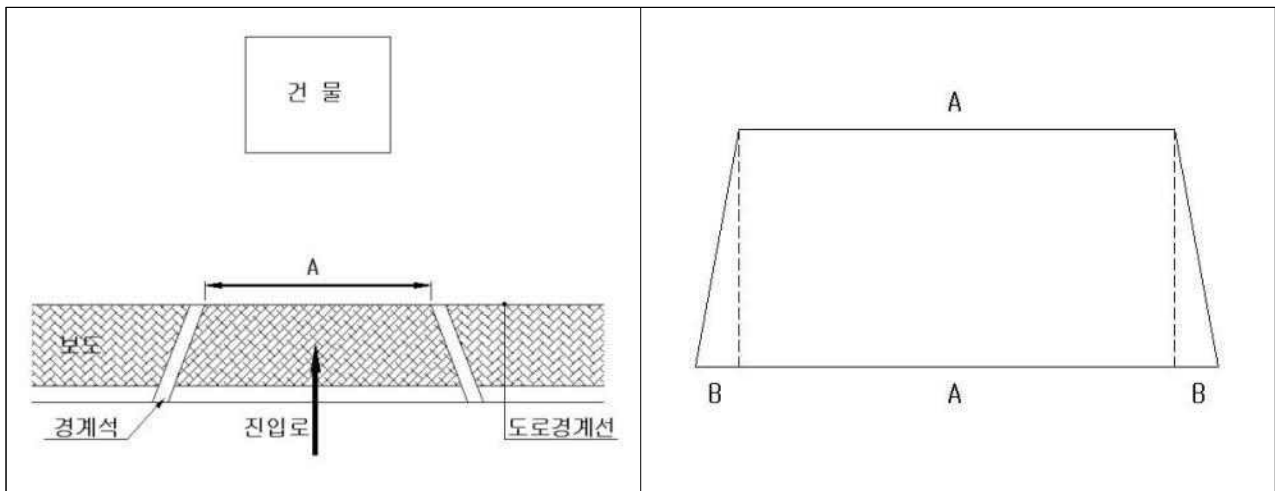
[별표] <개정 2019-02-20>

시 공 기 준

(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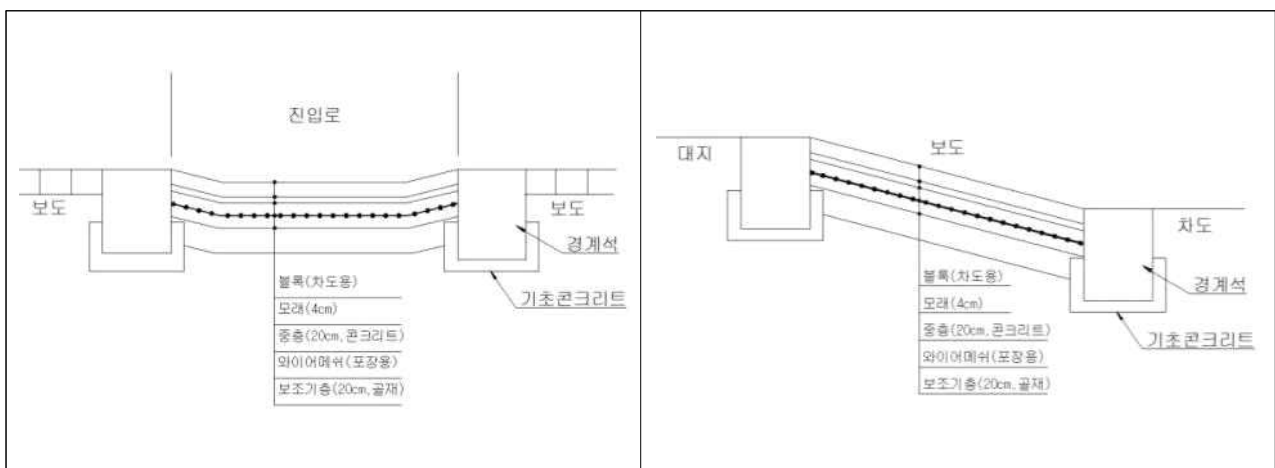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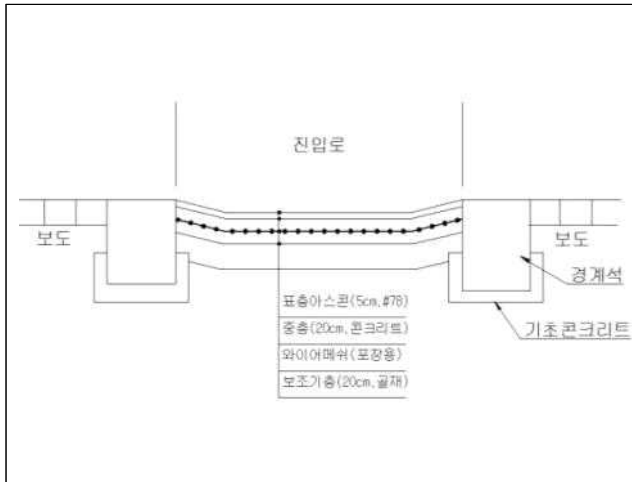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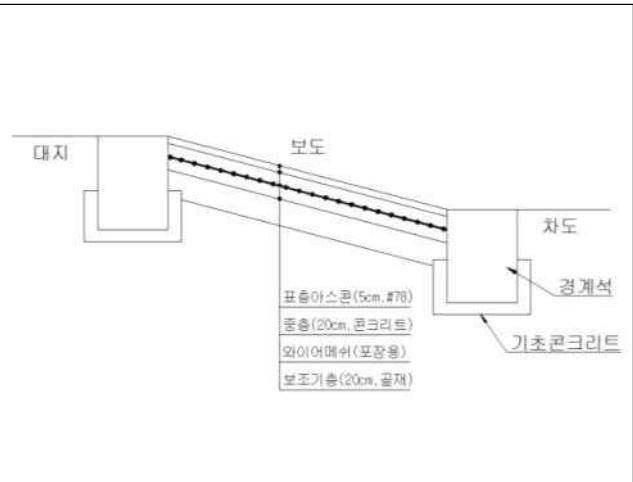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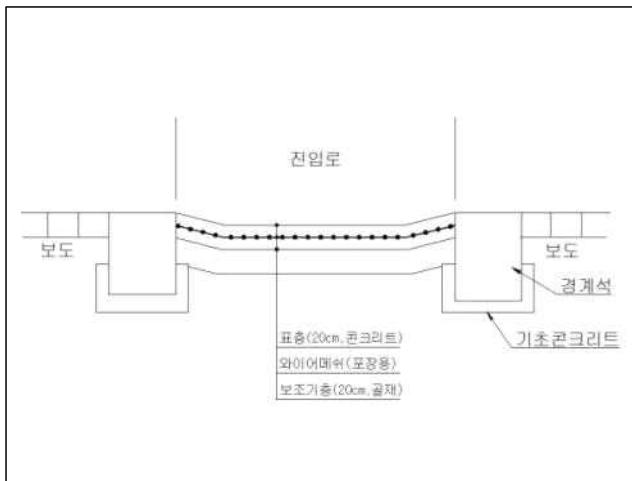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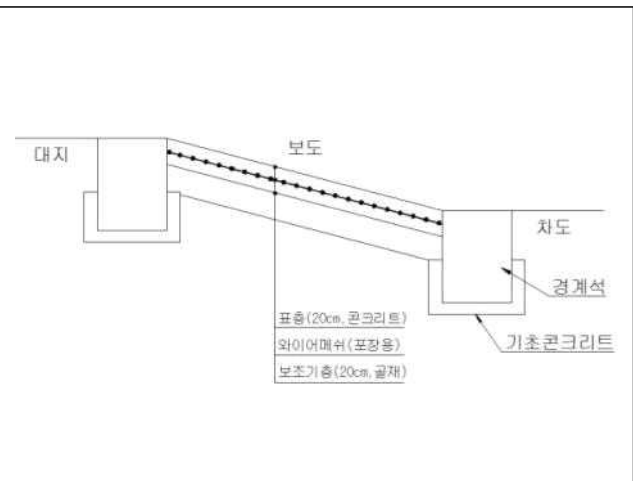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 도로점용 허가조건(차량출입시설)

1. 도로점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 및 도로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식 : 점용면적×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0.02×12/12년】
3. 설치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별표]시공기준에 의할 것】
4. 권리의무의 승계시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도로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5. 도로관리청의 공공사업 또는 필요시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전(설) 및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유지관리는 점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도로점용(인도포함)으로 인한 도로파손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점용구간내 지장물(전주, 맨홀, 도시가스, 통신관로, **가로수목**)은 진입로 설치시 까지 관계기관 및 **우리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허가기간 만료 후 도로점용 공사완료 확인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도로부지내 시설물 설치시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도로점용 허가 받은 구역 외, 공사 중에 훼손시킨 인접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점용허가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